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21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 박지혜·김정호·위성곤

김성환 • 박수현 • 조인철

이건태 • 서영석 • 전용기

한준호 • 박지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관련되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되는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국가전략기술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면서, 해당기술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은 시행령에서 국가전략 기술이 아닌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충분한 유 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태양광·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 및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의약품 및 태양광, 풍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 · 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각각 2024년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 12월 31일 및 2028년 12월 31일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 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 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 바이오의약품 및 태양광,

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 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 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 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 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가. · 나. (생략)

3. (생략)

② ~ ⑥ (생 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u>력</u>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l l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
<u>.</u>
1. (현행과 같음)
2
가
1) (현행과 같음)
2)

사업화시	∖설"이	라 한	上다)에
2024년	12월	<u>31일</u> 까	지 투
자하는	경우:	100분	의 15
(중소기	업은 10	00분의	25)에
상당하는	는 금액		
나. (생 형	략)		

3. (생략)

② ~ ⑤ (생 략)

2028년 12월 31일

나.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